

멕시코의 투자관련 법제 개관

- 회사법을 중심으로 -

이 준 표

(해외입법조사위원, 한국기업법무협회 선임연구원)

I. 서 언

II. 멕시코 회사법 개관

1. 회사법의 구성
2. 회사법의 주요내용

III. 결 어

[특 집]

2012년도 제1호는 교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협력 강화 대상으로 주목되고 있는 신흥시장국 MIKT(Mexico, Indonesia, Korea, Turkey)에 대한 투자관련 법제정보로 구성합니다.

I. 서 언

멕시코가 세계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신성장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10년 골드만삭스에서 MIKT(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를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와 함께 거시경제 지표의 개선, 성장에 필요한 자본력의 증가,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 및 풍부한 천연자원에 힘입어 경제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국가로 지목하면서부터 멕시코는 고성장 잠재력을 지닌 투자유망지역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¹⁾

세계경제환경의 불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는 꾸준한 고용 증가에 대한 국내소비 증가,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 정부재정의 건전성 및 낮은 인플레이션 압력 등을 감안할 때 거시경제 전망이 낙관적인 편이다. OECD도 2012년 경제성장률을 3.3%로 전망하였다.

우리나라의 대(對) 멕시코 투자는 1994년 NAFTA(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²⁾ 체결을 기점으로 본격화되었다. 2011년 6월말 누계 대(對) 멕시코 투자는 183개 법인, 17.5억 달러 규모이다. 중남미 최대 교역시장인 멕시코는 한국과 함께 21세기 세계경제의 주역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음에서는 멕시코 투자법제 가운데 회사법을 중심으로 조항의 구성 및 주요내용을 개관하고자 한다.

II. 멕시코 회사법 개관

1. 회사법의 구성

멕시코 회사법은 총 14장 264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총칙 규정으로서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1조는 회사법상 인정되는 기업형태를 6가지로 명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합명회사(Sociedad en Nombre Colectivo; S.N.C.), 합자회사(Sociedad en Comandita Simple; S. en

1) 멕시코는 지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2009년 -6.6%의 부진한 경제성장을 나타냈으나, 2010년 경제성장률이 5.5%를 기록하면서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2010년 멕시코의 국내총생산(GDP)은 1조 5,670억 달러(세계 11위)를 기록하였다.

2)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 개국이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위해 추진해온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의미한다.

C), 주식합자회사(Sociedad en Comandita por Acciones; S. en C. Por A), 유한회사(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 S. de R.L), 주식회사(Sociedad Anonima; S.A.), 협동조합(Sociedad Cooperativa; S.C.)이 있다.³⁾

멕시코 회사법은 제2장부터 제7장까지 각 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제2장에서는 합명회사, 제3장에서는 합자회사, 제4장에서는 유한회사, 제5장에서는 주식회사, 제6장에서는 주식합자회사, 제7장에서는 협동조합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특히 주식회사에 관한 제6장은 크게 6개의 절로 나뉘어 세부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절은 주식회사의 설립, 제2절은 주식, 제3절은 주식회사의 구성, 제4절은 주식회사의 감독, 제5절은 재정보고, 제6절은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제8장에서는 가변자본회사, 제9장에서는 회사의 합병, 이전, 분할(spin off)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0장과 제11장은 회사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 각각 규율하고 있으며, 제12장은 외국회사, 제13장은 이윤분배계약, 제14장은 회사의 등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멕시코 회사법〉	제7장 협동조합(제212조)
제1장 총 칙(제1조-제24조)	제8장 가변자본회사(제213조-제221조)
제2장 합명회사(제25조-제50조)	제9장 회사의 합병, 이전, 분할(제222조-제228조)
제3장 합자회사(제51조-제57조)	제10장 회사의 해산(제229조-제233조)
제4장 유한회사(제58조-제86조)	제11장 회사의 청산(제234조-제249조)
제5장 주식회사(제87조-제206조)	제12장 외국회사(제250조-제251조)
제6장 주식합자회사(제207조-제211조)	제13장 이윤분배계약(제252조-제259조)
	제14장 회사의 등기(제260조-제264조)

2. 회사법의 주요내용

1) 합명회사

멕시코 회사법은 제2장에서 합명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멕시코 회사법상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이 회사운영에 직접 참여한다.

3) 멕시코 회사법 제1조.

4) 'Spin off(스핀오프)'라 함은 자회사나 특정부문의 주식을 모기업 주주들에게 나눠주고 분리·독립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이는 주식의 매수 등을 통해 두 개의 기업이 하나로 합쳐지는 인수합병(M&A)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모든 사원은 회사의 의무 또는 채무를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공동으로 연대하여 변제할 무한책임을 진다.⁵⁾ 합명회사의 사원은 나머지 총 사원의 동의 없이는 회사의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⁶⁾ 사원의 사망시 회사가 그 승계인으로 하여금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관상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⁷⁾ 합명회사의 정관은 총 사원의 만장일치의 동의로써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정관상 다수결의 의해서 승인될 수 있는 변경의 경우로 규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⁸⁾

합명회사의 운영은 1인 대표에게 맡겨져야 하는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사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다.⁹⁾ 또한 대표의 임명과 해임은 사원투표로 자유롭게 이루어지며 다수결에 의한다.¹⁰⁾ 회사 대표의 결정은 다수결의 결의로 통과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사원들의 합의에 의한다.¹¹⁾

2) 합자회사와 주식합자회사

멕시코 회사법 제3장과 제6장에서는 각각 합자회사와 주식합자회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멕시코 회사법상 합자회사는 2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며,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회사 형태이다.¹²⁾ 무한책임사원은 실무를 담당하며 무한책임을 지고, 유한책임사원은 출자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유한책임을 지며 실무에는 직접 관여하지 못한다. 그러나 중요사안에 대한 승인 및 감사권은 보유하고 있다.

주식합자회사는 합자회사와 주식회사의 중간형태로서 무한책임사원과 주주로 구성된다. 두 회사 모두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는 모두 직접·연대책임을 부담한다.¹³⁾ 따라서 사원은 인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사원수가 적다. 대부분의 경우 의결정족수는 정관에서 특별하게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전원 합의가 필요하다.

5) 멕시코 회사법 제25조.

6) 멕시코 회사법 제31조.

7) 멕시코 회사법 제32조.

8) 멕시코 회사법 제34조.

9) 멕시코 회사법 제35조, 멕시코 회사법 제36조.

10) 멕시코 회사법 제37조.

11) 멕시코 회사법 제45조.

12) 멕시코 회사법 제51조.

13) 멕시코 회사법 제55조.

3) 유한회사

멕시코 회사법 제4장에서는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멕시코 회사법상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의 주주와 대비되는 사원들로 구성되며, 이 사원들은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회사 형태를 말한다. 유한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 50인 이하의 출자자가 필요하며¹⁴⁾ 초기 자본금이 3,000페소(약 300달러) 이상으로, 설립시 출자금액이 50%가 납부되어야 한다.¹⁵⁾ 유한회사는 원칙적으로 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지분율에 따른 출자자의 지위를 자유롭게 양도할 수 없다.¹⁶⁾

유한회사에서는 감사의 선임이 선택사항이며, 정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출자자 또는 제3자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¹⁷⁾ 회사경영을 위해 1인 이상의 경영자를 선임할 수 있고, 사원총회는 모든 사원이 참여하는 유한회사의 최고사결정기구이며,¹⁸⁾ 일반적인 의사결정은 정관에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출자금액 50% 이상이 참석하여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사원총회는 정관상 정한 시기에 일년에 1회 이상 개최되어야 한다.¹⁹⁾

4)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멕시코에 투자하는 해외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회사 형태이다. 주식회사는 주주의 출자로 이루어지며 권리·의무의 단위로서 주식으로 나누어진 일정한 자본을 가지고 모든 주주는 그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인수한 주식의 가액을 한도로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²⁰⁾ 따라서 주식회사의 특징은 자본, 주식, 주주의 유한책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멕시코에 투자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로 가변자본주식회사의 형태를 띠는데, 가변자본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증자 및 감자가 회사정관에 정해 놓은 한도 내에

14) 멕시코 회사법 제61조.

15) 멕시코 회사법 제62조, 제64조.

16) 멕시코 회사법 제65조-제67조.

17) 멕시코 회사법 제84조.

18) 멕시코 회사법 제78조.

19) 멕시코 회사법 제80조.

20) 멕시코 회사법 제87조.

서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특별한 허가, 승인 절차는 필요 없으며, 자본 변경사항에 대하여 해외투자등록처에 신고하기만 하면 된다.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다른 회사와 구별되어야 하며 주식회사 또는 그의 약자가 상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²¹⁾

(1) 회사의 설립

주주는 2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1인이 1주 이상 보유한다. 최소설립 자본금은 50,000페소이며, 설립시 최소 20%가 납입되어야 한다.²²⁾ 주식회사의 주식은 공개 모집이 가능하며,²³⁾ 모든 주식은 1년 이내에 모두 인수되어야 한다.²⁴⁾

(2) 회사의 운영

멕시코 회사법상 주식회사의 운영은 이사회, 주주총회, 감사로 구성된다.

멕시코 회사법 제5장 제3절은 이사회 및 이사, 대표이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멕시코 회사법상 주식회사는 주주총회를 통하여 1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이사는 주주 중에서 선임될 수도 있고, 제3자를 선임할 수도 있다.²⁵⁾ 이사가 2인 이상 선임될 경우에는 이사회를 구성한다.²⁶⁾

멕시코 회사법 제5장 제4절은 회사에 대한 감독이라는 표제하에 감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멕시코 회사법 제164조는 주식회사에 대한 감독은 감사에게 맡겨지며, 그 감사는 주주총회를 거쳐 1인 이상 선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감사의 자격²⁷⁾ 및 권한과 의무²⁸⁾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멕시코 회사법 제5장 제6절은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멕시코 회사법 제178조는 주주총회를 회사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이는 반드시 회사의 주소지에서 개최되어야 한다.²⁹⁾ 멕시코 회사법 제181조와 제182조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정

21) 멕시코 회사법 제88조.
 22) 멕시코 회사법 제89조.
 23) 멕시코 회사법 제92조.
 24) 멕시코 회사법 제97조.
 25) 멕시코 회사법 제142조.
 26) 멕시코 회사법 제143조.
 27) 멕시코 회사법 제165조.
 28) 멕시코 회사법 제166조.
 29) 멕시코 회사법 제179조.

하고 있다. 주주총회의 소집권자는 원칙적으로 이사 내지 이사회이며 감사도 소집할 수 있다.³⁰⁾

5)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서 활동분야에 제한은 없다. 멕시코회사법에서는 협동조합의 운영에 대하여 특별하게 규정하지 않고, 협동조합 자체의 정관과 내규를 통해 규율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다.³¹⁾

6) 회사의 해산과 청산

멕시코 회사법 제10장과 제11장에서는 각각 회사의 해산과 청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멕시코 회사법 제229조는 회사의 해산사유로 기간 만료, 회사목적을 계속 추구하며 운영하기에 불가능한 경우, 법률과 정관에 따라 주주의 결의를 거친 경우, 멕시코 회사법에서 정한 최소주주의 수에 미달한 경우, 회사자본의 3분의 2 이상을 손실한 경우 등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해산사유가 증명된 경우, 해산은 등기 사무소에 기록되어야 한다.³²⁾

이렇게 해산하는 경우 회사는 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³³⁾ 청산절차는 1인 이상의 청산인에게 맡겨져야 하며, 회사의 법률상 대표일 것을 요한다.³⁴⁾ 구체적인 청산인의 권한은 멕시코 회사법 제242조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III. 결 어

오늘날 멕시코와 한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멕시코가 현재 중남미 국가 중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라는 점에서, 향후 NAFTA 및 중남미국가

30) 멕시코 회사법 제183조.

31) 멕시코 회사법 제212조.

32) 멕시코 회사법 제232조.

33) 멕시코 회사법 제234조.

34) 멕시코 회사법 제235조.

와의 FTA 체결에 따른 멕시코의 개방적인 경제구조 및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양국 국민간 문화교류증진 등을 통한 상호이해 및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멕시코를 북미와 중남미 진출의 거점으로 활용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멕시코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만큼 이 지역의 투자 법제에 대한 이해도 매우 중요하다. 앞서 개관한 멕시코 회사법은 회사유형별로 나누어 규율한 점과 주식회사의 설립과 지배구조에 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상법상 회사법과 유사하다. 다만 우리는 상법 내에 회사편이 속해 있지만, 멕시코의 경우 별도의 단행법으로 분리되어 회사법이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지역으로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한국의 투자기업은 먼저 회사법에 대한 정확한 인식하에 투자하는 신중함이 필요할 것이다.